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 추가〉

■ 이기헌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535호)

2024. 9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동 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 2	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기현 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7. 9.
3. 회 부 일 : 2024. 7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복지전담공무원, 어린이집 원장, 의료인, 학교의 장,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¹⁾에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생략)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6. (생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27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및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</u>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1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(이하 “아동권리보장원”이라 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-
2.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)
 3.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
 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7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8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 9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10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 1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
 1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 13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 14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 15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
 1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·치료·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 1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18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 19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 2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 21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22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 23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 24. 「아동복지법」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 25.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 26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2. 검토의견

□ 개정안은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및 제15조의17²⁾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기개입과 피해아동을 신속한 보호하려는 것임.

최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건 중에는³⁾⁴⁾,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생후 9일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하는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음.

또한,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1년 2월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,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“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사건이

2) 「모자보건법」

제15조(산후조리업의 신고)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력·시설의 기준,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모자동실 설치·운영,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[단독] 생후 9일 된 아기 얼굴 '퍽'...산후조리원 직원, 검찰 송치, MBN, 2024-07-12 19:01 <https://www.mbn.co.kr/news/society/5041444>

4) 갓 태어난 신생아를?...“침대 벽에 밀치고 얼굴에 손수건” 산후조리원 학대 신고, 매일경제, 2023-01-18 19:20:00 <https://www.mk.co.kr/news/society/10611681>

장기화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를 방해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”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음⁵⁾.

- 현행법 제63조⁶⁾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, 개정안과 같이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면 앞의 사건과 같이 아동학대범죄 은폐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.

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등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참고로,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(2024. 8. 7. 시행)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아동관련기관에 “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”을 추가한 바 있음⁷⁾.

5) 신생아 귀 잡아 비틀고 조직적 은폐한 산후조리원...무더기 실형, 노컷뉴스, 2024-07-31 10:39 https://www.nocutnews.co.kr/news/6188038?utm_source=naver&utm_medium=article&utm_campaign=20240731104019

6)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

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0. 3. 24., 2021. 1. 26.>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
7) 「아동복지법」

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아동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

□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.

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보장원, 지방자치단체(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),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,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,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
2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,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3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
4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
5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
6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
7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,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
8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
9. 「의료법」 제3조의 의료기관(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)
1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
1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
12.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(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)
13.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
14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
1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치료재활센터
16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의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
17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
18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
19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·교습소
20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
21.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
22.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
2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,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(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4.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
25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1항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
26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(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)
27.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
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

-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신고의무자를 “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”로 규정하고 있으나, “산후조리원의 장”이 해당 조문의 “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산후조리업자”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059